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2. . . (제 회)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보건복지부장관)
제출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제안이유

보험료 부과체계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지난 2017년 국회에서 여야간 합의를 통해 통과된 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안의 주요 내용을 시행령에 반영하고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조정과 정산제도를 도입하여 소득 중심 보험료 부과 원칙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조기기 급여 신청서류 명칭 현행화(안 제26조의2 제1항)

보조기기 등의 지급을 신청하는 서류 명칭을 “보조기기급여비 지급청구서”에서 “보조기기 급여 지급청구서”로 현행화 함

나. 지역가입자 보험료 하한규정 개정(안 제32조제2호나목)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 하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하한과 비슷한 수준으로 고시하도록 가입자간 형평성을 제고함

다.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에서 제하는 금액 조정(안 제41조)

직장 가입자의 소득월액 산정시 보수외 소득에서 제하는 금액을 3,4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하향하여 직장인의 소득월액(보수 외 소득) 보험료를 적정하게 하고, 안 제41조의2 신설에 따른 조문 정비

라. 보험료 조정 및 사후정산 규정(안 제41조의2, 안 제42조의3)

- 1) 현재 건강보험공단의 정관과 지침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수 외 소득) 보험료와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의 산정 기준시점과 ‘보험료 조정제도’의 근거를 시행령으로 상향 규정함
- 2)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보험료를 조정받은 경우 사후적으로 소득이 확인되면 보험료를 정산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보험료 조정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실제 소득에 따른 보험료 부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마. 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지역가입자 주택부채 공제 기준 개정(안 제42조의2)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자의 2022년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에서 45%로 조정됨에 따라 지역가입자 주택 관련 보험료 산정시 주택 관련 대출금액을 제외하는 대상 주택의 기준과 대출의 반영비율에 해당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반영하도록 조정함

바. 지역가입자 보험료 정률제 도입 등(안 제42조 제3항, 별표 4)

- 1) 지역가입자의 소득에 부과하는 보험료를 현행 등급별점수 방식에서 소득금액에 비례하게 보험료율에 따라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여 보험료 부담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보험료 부과체계의 형평성을 개선함
- 2) 지역가입자 소득 보험료 하한액을 적용받는 기준소득을 연 100만원에서 336만원으로 상향함

- 3)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기본공제금액을 현재 500~1,350만 원(과표 기준)에서 5천만 원으로 상향하고 배기량과 관계없이 차량 가액이 4천만 원 이하인 차량은 재산보험료부과대상에서 제외하여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는 등 보험료 부과체계의 형평성을 제고함

사. 타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수정(별표4의2)

「약사법」 개정에 따라 이를 인용하는 별표4의2 인용 조문을 개정함

아. 건보공단이 타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 추가(안 별표4의3)

- 1) 가입자와 피부양자가 준요양기관으로부터 구입(대여)한 의료기기 및 소모성 재료와 장애인 보조기기 등에 대해 건보공단이 지급하여야 할 요양비와 보조기기 보험급여를 정확히 파악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대상의 전자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에 관한 자료를 국세청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함
- 2)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법」에 따른 급여나 보상에 관한 자료를 연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현재 시범사업 중인 상병수당 지급시 고용보험과 중복되지 않도록 함
- 3) 건보공단이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질병 조기발견·예방 및 건강관리를 위하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료를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함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제1항 전단 중 “보조기기급여비”를 “보조기기 급여”로 한다.

제32조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 가목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10
이하 90이상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제41조제3항 중 “3,400만원”을 “2,000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소득월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의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1. 매년 1월부터 10월까지의 소득월액: 귀속연도가 전전년도인 보수외소득
2. 매년 11월 및 12월의 소득월액: 귀속연도가 전년도인 보수외소득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득월액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4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2(소득월액의 조정 등) ① 제41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폐업 등 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직장가입자가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해당 연도의 소득(제41조제1항 제3호와 제4호의 소득에

한한다.)으로 소득월액을 산정할 것을 공단에 신청한 경우에는 공단은 제출서류로 확인되는 해당 연도의 보수외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월액을 조정하고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소득월액 보험료를 조정받은 직장가입자의 해당 연도 보수외 소득이 확인되면 이를 기준으로 소득월액을 다시 산정하여 정산할 수 있다.

③ 공단은 원래 산정·징수한 소득월액보험료의 금액이 제2항에 따라 다시 산정한 소득월액보험료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직장가입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직장가입자로부터 추가로 징수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제3항에 따라 추가로 징수해야 할 소득월액 보험료를 직장가입자가 분할납부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9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험료 조정 신청 방법과 이에 필요한 서류 등 소득월액 보험료 산정과 정산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42조제3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경우에는”을 “자동차는”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경우”를 “자동차”로 하며,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과세표준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차량의 가액이 4천만원 미만인 자동차

④ 제1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 중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기준이 되는 시기는 제41조제5항을 준용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42조의2제2항제1호의 “60퍼센트”를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의 공정시장가액비율”로 하고, 제3항제1호의 “60퍼센트”를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의 공정시장가액비율”로 한다.

제42조의3부터 제42조의7까지를 각각 제42조의4부터 제42조의8까지로 하고, 제4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3(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보험료부과점수의 조정 등) ① 제42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폐업 등 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지역가입자가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해당 연도의 소득(제41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소득에 한한다.)으로 보험료부과점수를 산정할 것을 공단에 신청한 경우에는 그 제출 서류로 확인되는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부과점수를 조정하고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보험료부과점수를 조정받은 지역가입자의 해당 연도 소득이 확인되면 이를 기준으로 보험료부과점수를 다시 산정하고 그에 따라 보험료를 정산할 수 있다.

③ 공단은 원래 산정·징수한 보험료의 금액이 제2항에 따라 다시 산정

한 보험료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지역가입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지역가입자로부터 추가로 징수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제3항에 따라 추가로 징수해야 할 보험료를 지역가입자에게 분할납부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9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험료부과점수의 조정을 신청하는 방법과 이에 필요한 서류 등 보험료부과점수의 조정 및 보험료 정산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별표 4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100만원”을 “336만원”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나목1) 및 2) 외의 부분 전단 중 “다음 표에 따른 기본공제액을”을 “5천만원을”로 하고, 같은 목 2) 표를 삭제하며, 같은 표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표 4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며, 제3호(종전의 제4호)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소득에 부과하는 점수는 제42조제2항에 따른 소득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여 합산한 소득금액을 아래 표와 같이 산정한다.

소득금액	점수
336만 원 초과 ~ 6억 2,722만 원 이하	95.323 + 336만원을 초과하는 소득 1만원 당 1만 분의 2,837점
6억 2,722만 원 초과	17,796.15

3. 자동차등급별 점수

구분		사용연수별 점수		
등급	배기량	3년 미만	3년 이상 6년 미만	6년 이상 9년 미만
		100%	80%	60%

1	800시시 이하	18	14	11
2	800시시 초과 1,000시시 이하	28	23	17
3	1,000시시 초과 1,600시시 이하	59	47	35
4	1,600시시 초과 2,000시시 이하	113	90	68
5	2,000시시 초과 2,500시시 이하	155	124	93
6	2,500시시 초과 3,000시시 이하	186	149	111
7	3,000시시 초과	217	173	130

별표 4 비고 제1호에서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위 표에서 “사용연수”란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른 해당 자동차의 최초 등록일이 속하는 달부터 12개월이 되는 달까지를 1년으로 하고 그 다음 달부터 12개월이 되는 달마다 1년을 추가하여 계산한 연수를 말한다.
2. 위 표에서 부과대상은 제42조제3항제3호 단서의 자동차를 제외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23조제2호에 따른 그 밖의 승용자동차는 위 표의 배기량 구분에도 불구하고 2등급으로 적용한다.

별표 4의2 제1호가목 본문 중 “같은 법 제76조제1항제5호의2”를 “같은 법 제76조제1항제5호의7”로 한다.

별표 4의3 제1호터목 중 “「별정우체국법」”을 “「별정우체국법」, 「고용보험법」”으로 하고, 같은 호 제1호초목을 토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초목 및 코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초. 법 제49조 요양 명세 확인 및 법 제51조 보조기기 보험급여에 따른 「소득세법」 제163조,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전자계산서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제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
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방접종 이력 및 감염병 환자 등에 관한 자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의2 개정규정은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료 산정에 관한 특례) ① 2022년 8월에 지역가입자로 영 제32조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하한 미만의 보험료를 납부한 지역가입자 중 이 영 시행으로 시행일에 별표4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을 적용받아 보험료가 인상되는 지역가입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비율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는 보험료와 개정규정에 따라 부과하는 보험료를 비교하여 인상된 금액을 감액한다. 다만, 지역가입자의 세대 구성의 변화 등으로 제1호와 제2호에 따라 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감액한다.

1. 2022년 9월분 보험료부터 2024년 10월분 보험료 : 인상된 금액의 전액
2. 2024년 11월분 보험료부터 2026년 8월분 보험료 : 인상된 금액의 10

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험료의 감액은 2026년 8월분 보험료까지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각호에서 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해당일이 매월 1일인 경우에는 그 전달로 한다)의 보험료까지 감액한다.

1. 제1항에 따라 감액을 적용 받던 지역가입자의 자격이 변동(「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변동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경우: 자격 변동일

2. 제1항에 따라 감액을 적용 받던 지역가입자의 소득 또는 재산이 증가하여 별표4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날

제3조(해당 연도 보수외소득 및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보험료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의2 및 제42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2년 9월분 보험료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6조의2(요양비등수급계좌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 56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요양 비등을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요양비등수급계좌” 라 한다)로 받으려는 사람은 요 양비 지급청구서와 <u>보조기기급 여비</u> 지급청구서 등에 요양비등 수급계좌의 계좌번호를 기재하 고, 예금통장(계좌번호가 기록 되어 있는 면을 말한다) 사본을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 다. 요양비등수급계좌를 변경하 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6조의2(요양비등수급계좌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① --- ----- ----- ----- ----- ----- <u>보조기기 급 여</u> ----- ----- ----- ----- ----- -----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2조(월별 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 법 제69조제6항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의 상한 및 하한 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제32조(월별 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은 다 음 각 목과 같다.	2. -----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u>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u>	나. <u>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u>

료액: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1천분의 60 이상 1천분의 65 미만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제41조(소득월액) ①·② (생략)

③ 법 제71조제1항 계산식 외의 부분 및 같은 항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각각 연간 3,400만원을 말한다.

④ (생략)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득월액의 산정에 포함되는 제1항 각 호의 소득자료의 반영 시기 등 소득월액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신설>

료액: 가목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10이하 90이상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제41조(소득월액)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2,000만원 -----

④ (현행과 같음)

⑤ 소득월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의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1. 매년 1월부터 10월까지의 소득월액: 귀속연도가 전전년도인 보수외소득

2. 매년 11월 및 12월의 소득월액: 귀속연도가 전년도인 보수외소득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한 사항 외에 소득월액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단의

<신 설>

정관으로 정한다.

제41조의2(소득월액의 조정 등)

① 제41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폐업 등 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직장가입자가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해당 연도의 소득(제41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소득에 한한다.)으로 소득월액을 산정할 것을 공단에 신청한 경우에는 공단은 제출서류로 확인되는 해당 연도의 보수외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월액을 조정하고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소득월액 보험료를 조정받은 직장가입자의 해당 연도 보수외소득이 확인되면 이를 기준으로 소득월액을 다시 산정하여 정산할 수 있다.

③ 공단은 원래 산정·징수한 소득월액보험료의 금액이 제2항에 따라 다시 산정한 소득월액보험료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직장가입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부족한

	<u>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직장가입자로부터 추가로 징수하여야 한다.</u> <u>④ 공단은 제3항에 따라 추가로 징수해야 할 소득월액 보험료를 직장가입자가 분할납부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9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u> <u>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험료 조정 신청 방법과 이에 필요한 서류 등 소득월액 보험료 산정과 정산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u>
제42조(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기준) ①·② (생략)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2. (생략)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23조 제1호에 따른 승용자동차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그 밖의 승용자동차.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u>경우에는 제외한다.</u> 가. 사용연수가 9년 이상인	제42조(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기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2. (현행과 같음) 3. ----- ----- ----- -----. ----- <u>자</u> <u>동차</u>는 -----. 가. -----

경우

나. 배기량이 1,600cc 이하인 경우. 다만, 과세표준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차량의 가액이 4천만원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다. ~ 바. (생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에 포함되는 제1항 각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의 반영시기 등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신설>

제42조의2(주택 관련 대출금액의 보험료부과점수 제외) ① (생략)

자동차

나. 과세표준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차량의 가액이 4천만원 미만인 자동차

다. ~ 바.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 중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기준이 되는 시기는 제41조제5항을 준용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42조의2(주택 관련 대출금액의 보험료부과점수 제외) ① (현행

② 법 제7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의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을 말한다.

1. 1세대1주택자의 경우: 주택담보대출등을 받아 구입한 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금액이 「소득세법」 제52조제5항 본문에 따른 주택 기준시가의 60퍼센트 이하일 것

2. (생략)

③ 법 제7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대출금액을 평가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1세대1주택자의 경우: 주택담보대출등 금액의 합산액의 60퍼센트. 이 경우 그 금액이 해당 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재산세 과세표준금액으로 하며, 그 금액이 5천만원을 넘는 경우에

과 같음)

② -----

--.

1. -----

----- 「지
방세법 시행령」 제109조의
공정시장가액비율-----
-

2. (현행과 같음)

③ -----

--.

1. -----
----- 「지
방세법 시행령」 제109조의
공정시장가액비율-----

는 5천만원으로 한다.

2. (생략)

④·⑤ (생략)

<신설>

2. (현행과 같음)

④·⑤ (현행과 같음)

제42조의3(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보험료부과점수의 조정 등) ①
제42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폐
업 등 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지역가입자가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
고 해당 연도의 소득(제41조제1
항제3호 및 제4호의 소득에 한
한다.)으로 보험료부과점수를
산정할 것을 공단에 신청한 경
우에는 그 제출 서류로 확인되
는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부과
점수를 조정하고 보험료를 부과
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보험료
부과점수를 조정받은 가입자의
해당 연도 소득이 확인되면 이
를 기준으로 보험료부과점수를
다시 산정하고 그에 따라 보험
료를 정산할 수 있다.

③ 공단은 원래 산정·징수한
보험료의 금액이 제2항에 따라

<u>제42조의3</u> ~ <u>제42조의7</u> (생략)	<u>다시 산정한 보험료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가입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가입자로부터 추가로 징수하여야 한다.</u> <u>④ 공단은 제3항에 따라 추가로 징수해야 할 보험료를 가입자에게 분할납부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9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u> <u>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험료부과점수의 조정을 신청하는 방법과 이에 필요한 서류 등 보험료부과점수의 조정 및 보험료 정산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u> <u>제42조의4</u> ~ <u>제42조의8</u> (현행 제42조의3부터 제42조의7까지와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연 락 처	(044) 202 - 2706